

서 정 대 학 교



수신자 각 부서(처)장 및 학내구성원
(경유)

제 목 서정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람 공고의 건

1. 관련근거 : 서정대학교 규정집 학칙 제16장(학칙 제·개정 절차) 제7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5조(공고기간), 2024년 하반기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의견 제출 요청의 건(기획조정실-2024-4281, 2024.07.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정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의 개정을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불임과 같이 공람공고를 시행하오니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람공고 및 공람이 완료된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9월 1일 자 시행 예정입니다.

※ 공람 후 의견제출 등은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붙임 :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람 공고문 1부.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부.
3.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기 획 조 정 실 장

기안자

강한모



기획전략과장

오성범



기획조정실장

이지훈



시행 기획조정실 제24-08-08호 (2024.08.12.) 접수 ()

우 1142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 www.seojeong.ac.kr

전화 031-860-5286 전승 031-859-6936 / hanmo10@seojeong.ac.kr / 공개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공람 공고

서정대학교 기획조정실에서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 조화를 거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열람하시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고 2024년 9월 1일 자 시행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2. 공람기간 : 공람일로부터 10일간
3. 관련부서 : 각 부서 및 학과, 교수협의회
4. 의견제출 : 기획조정실 대리 강한모

2024년 8월 12일

서정대학교 기획조정실장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규정명 :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1. 개정 사유

1) 학칙

- ▶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정본 반영
- ▶ 학기 최소, 최대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반영
- ▶ 학기 최소, 최대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반영
- ▶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한 졸업필요학점 완화
- ▶ 학과 의견수렴 결과, 현행 이수학점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수학점 기준 변경을 통해 강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학칙 시행세칙

- ▶ 학칙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세칙 조항 변경

2.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주요 개정내용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정에 따른 학칙 반영
	제33조(학점이수)	학기 최소, 최대 이수학점 변경
	제44조(성적의 취소)	제33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성적 취소기준 학점 변경
	제46조(졸업)	제33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졸업 기준 학점 변경
학칙 시행 세칙	제48조(졸업의 기준)	관련 학칙 조항 개정으로 인한 변경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학칙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03.25., 2005.03.01., 2006.03.01., 2007.03.01., 2008.01.30., 2008.08.22., 2009.08.27., 2010.08.31., 2012.02.10., 2012.12.04., 2014.02.26., 2014.08.28., 2015.08.20., 2016.02.29., 2017.04.27., 2018.07.10., 2019.10.01., 2020.11.23., 2021.05.17., 2022.04.15., 2022.07.01., 2023.09.01.>	①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03.25., 2005.03.01., 2006.03.01., 2007.03.01., 2008.01.30., 2008.08.22., 2009.08.27., 2010.08.31., 2012.02.10., 2012.12.04., 2014.02.26., 2014.08.28., 2015.08.20., 2016.02.29., 2017.04.27., 2018.07.10., 2019.10.01., 2020.11.23., 2021.05.17., 2022.04.15., 2022.07.01., 2023.09.01., 2024.09.01.>	202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 최종 반영

학부(과)명 및 계열			입학정원
학부 및 학과명	계열	주간	주간
호텔외식조리과	자연과학		30
반려동물과	자연과학		100
반려동물보건과	자연과학		30
뷰티아트과	자연과학		40
응급구조과(3년제)	자연과학		60
간호학과(4년제)	자연과학		140
그린식품가공과	자연과학		30
사회복지과	인문사회		190
호텔관광과	인문사회		30
유아교육과(3년제)	인문사회		73
휴먼케어서비스과	인문사회		50
글로벌융합복지학부	인문사회		62
자동차과	공학		50
소방안전관리과	공학		50
미래라이프 융합학부	창업경영과	인문사회	40
	사회복지상담과	인문사회	180
	스마트자동차과	공학	40
글로벌인재 학부	의료코디네이션과(3년제)	인문사회	20
	글로벌산업공학과	공학	120
정원외	스마트팩토리공학과	공학	
입학정원 합계			1,335

학부(과)명 및 계열			입학정원
학부 및 학과명	계열	주간	주간
호텔외식조리과	자연과학		30
반려동물과	자연과학		80
반려동물보건과	자연과학		50
뷰티아트과	자연과학		40
응급구조과(3년제)	자연과학		60
간호학과(4년제)	자연과학		160
그린식품가공과	자연과학		30
사회복지과	인문사회		150
호텔관광과	인문사회		30
유아교육과(3년제)	인문사회		46
휴먼케어서비스과	인문사회		50
글로벌융합복지과	인문사회		52
스마트모빌리티과	공학		50
소방안전관리과	공학		50
미래라이프 융합학부	창업경영과	인문사회	50
	사회복지상담과	인문사회	210
	스마트자동차과	공학	40
글로벌인재 학부	의료코디네이션과(3년제)	인문사회	20
	글로벌산업공학과	공학	60
정원외	글로벌섬유비즈니스과	공학	
	한국어과	인문사회	
자율전공학부	-		70
입학정원 합계			1,328

제33조(학점 이수)	②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까지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02.26., 2023.12.15.>	②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 까지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02.26., 2023.12.15., 2024.09.01.>	학기 최소, 최대 이수학점 변경 학과 의견수렴 결과 현행 이수학점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수 학점 기준 변경을 통해 강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44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2.04., 2022.12.01.>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다만, 계절 학기에 취득한 성적과 학칙 제33조제2항에서 인정한 경우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04.>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5.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신설 2022.12.0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2.04., 2022.12.01., 2024.09.01.>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1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다만, 계절 학기에 취득한 성적과 학칙 제33조제2항에서 인정한 경우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04., 2024.09.01.>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5.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신설 2022.12.01.>	제33조(학점 이수) 제2항의 최소, 최대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성적 취소 기준 학점 변경

<p>제46조(졸업)</p>	<p>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이상,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전문 학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03.25., 2012.12.04., 2016.02.29., 2020.02.14., 2020.11.23., 2022.03.01., 2022.12.01., 2024.04.15.></p>	<p>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0학점 이상, 3년제 110학점 이상, 4년제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이상,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전문 학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03.25., 2012.12.04., 2016.02.29., 2020.02.14., 2020.11.23., 2022.03.01., 2022.12.01., 2024.04.15., 2024.09.01.></p>	<p>제33조(학점이수) 중 최소, 최대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졸업 기준 학점 변경</p>
<p>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①이 학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학과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상담아동청소년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휴먼케어서비스학과 소속으로 보며, 본 사항의 경과조치에 관한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p> <p>제3조(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의 적용시기) 제46조(졸업)의 2항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은 2024학년도 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납입금의 반환 조항의 적용시기) 제68조의2(납입금의 반환) 제2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①이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수학점 변경 및 성적의 취소 기준 변경, 졸업 학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학칙 중 제33조2항, 제44조2호, 제46조2항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p>	

- ※ 조항별로 따로 입력 할 것.
- ※ 신·구 대조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정된 내용에는 색깔, 밑줄 등의 표시를 할 것.
- ※ 조항 신설 및 삭제 시에는 현행, 개정(안) 칸 중 한쪽에만 입력할 것.(제정 시에는 개정(안) 부분에만 제정 규정 입력, 삭제 시에는 현행 부분에 기존 규정 입력)
- ※ 개정(안) 부분에는 규정 제·개정 표시 방식에 의거하여 조항에 신설, 개정, 삭제, 전문개정, 본조신설 등의 규정 변동 이력을 표시할 것.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학칙 시행세칙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48조(졸업의 기준)	<p>제48조(졸업의 기준) ①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문학사 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학사학위 과정 중 본 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전공심화 과정은 2학기(1년 과정), 4학기(2년 과정)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07.03.01., 2012.12.04., 2016.02.29.></p> <p>2. 2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72학점 이상인 자<개정 2020.02.14., 2022.03.01.></p> <p>3. 3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12학점 이상인 자<신설 2004.03.25.><개정 2020.11.23., 2022.03.01.></p> <p>4. 전공심화과정은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자<신설 2012.12.04.><개정 2020.11.23., 2022.03.01., 2024.04.15.></p> <p>5. 4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32학점 이상인 자<신설 2016.02.29.><개정 2020.11.23., 2022.03.01.></p>	<p>제48조(졸업의 기준) ①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문학사 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학사학위 과정 중 본 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전공심화 과정은 2학기(1년 과정), 4학기(2년 과정)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07.03.01., 2012.12.04., 2016.02.29.></p> <p>2. 2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개정 2020.02.14., 2022.03.01., 2024.09.01.></p> <p>3. 3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10학점 이상인 자<신설 2004.03.25.><개정 2020.11.23., 2022.03.01., 2024.09.01.></p> <p>4. 전공심화과정은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자<신설 2012.12.04.><개정 2020.11.23., 2022.03.01., 2024.04.15.></p> <p>5. 4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자<신설 2016.02.29.><개정 2020.11.23., 2022.03.01., 2024.09.01.></p>	<p>학칙의 관련 규정의 기준 변경으로 인한 개정으로 인한 하위 시행세칙에의 반영</p>

부 칙	부 칙	부 칙	
	<p>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서식의 부서명칭 등의 변경 반영은 대학의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시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p> <p>②제12조(재학생등록) 제4항의 단서규정은 2024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졸업 기준 학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학칙 시행세칙 중 제48조2호 내지 5호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p>	

- ※ 조항별로 따로 입력 할 것.
- ※ 신·구 대조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정된 내용에는 색깔, 밑줄 등의 표시를 할 것.
- ※ 조항 신설 및 삭제 시에는 현행, 개정(안) 칸 중 한쪽에만 입력할 것.(제정 시에는 개정(안) 부분에만 제정 규정 입력, 삭제 시에는 현행 부분에 기존 규정 입력)
- ※ 개정(안) 부분에는 규정 제·개정 표시 방식에 의거하여 조항에 신설, 개정, 삭제, 전문개정, 본조신설 등의 규정 변동 이력을 표시할 것.